

공

고

● 문화재청공고 제2022-83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,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「고창 무장기포지」의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년 3월 2일

문화재청장

1. 공 고 명 : 「고창 무장기포지」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지정 예고

가. 대상 문화재

- 1) 종 별 : 사적
- 2) 문화재 명칭 : 고창 무장기포지(高敞 茂長起包址, 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)
- 3) 소 재 지 :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
- 4) 지정 면적 : 문화재구역 19필지 7,390㎡ (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)
- 5) 지정사유
 -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, 그리고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,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었음.
 - 1894년 3월 20일 고창 무장(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/사적 지정 신청 구역)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인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으로 추정됨.
 - 포고문을 공포하면서 국지적인 봉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 확대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장소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.

나. 관리단체 : 전라북도 고창군

2. 예 고 일 : 관보 공고일

3.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4. 특기사항 :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새소식 「문화재 지정예고」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연 락 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: 전화 042-481-4840 / 팩스 042-481-484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ha.go.kr>

나. 지방자치단체

-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: 전화 063-280-3145 / 팩스 063-280-2539
- 주소 (54968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
-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: 전화 063-560-2943 / 팩스 063-560-2449
- 주소 (56428)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

붙임 : 지번별 면적조서 1부.

고창 무장기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

☐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(문화재구역)

지정구역 : 19필지 / 7,390㎡

연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적(㎡)	지정면적(㎡)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	1114-7	하천	866	866	국(건설부)		
2		1114-13	하천	838	838	국(건설부)		
3		1114-11	하천	202	202	국(건설부)		
4		1114-14	하천	3	3	국(건설부)		
5		1115-13	잡	313	313	(기획재정부)		
6		529-1	전	328	328	고창군		
7		529-7	전	22	22	고창군		
8		587	전	172	172	고창군		
9		588	전	321	321	고창군		
10		589-2	답	148	148	최○○	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5	
11		589-3	답	132	132	최○○	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5	
12		589	답	698	698	고창군		
13		590	답	436	436	고창군		
14		591	답	337	337	고창군		
15		592	전	172	172	고창군		
16		593	전	488	488	고창군		
17		594	전	726	726	고창군		
18		595	전	886	886	고창군		
19		596	전	302	302	고창군		
		합 계		7,390	7,390			